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24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권장하여 관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권장 (조항15조 신설)
- 미세먼지 관리 우수시설 선정 (제1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uhee24@seoul.go.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환경과

3) 전 화 : 02-3396-5623 (팩스 : 02-3396-8763)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권장)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내부공기를 배출
하는 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배출구 등에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의 설치
를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
2. 봉제공장, 인쇄공장
3. 도로터널, 지하철도
4. 일반음식점

제16조(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 의식 확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해 미세먼
지 저감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및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인증마크 형태 및 모양, 인증시설 선정 절차,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